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위원회 세칙

(일부개정) 2023.3.20.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고자 청운효자동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원칙)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1.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이 되며,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 ③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 ⑥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 ⑦ 위원회에는 명예고문 및 감사를 둘 수 있다.
- ⑧ 청운효자동 직능단체장을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추천한다. 단, 위촉된 직능단체장 변경시 해당단체와 협의하여 재추천한다.

제5조(인적사항의 공개)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게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고문은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위원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자치회관의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해촉)

-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당해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4.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연속 3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3회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
- ② 월 1회 개최하는 위원회 정기 월례회의는 매월 셋째주 월요일로 한다.
(단 법정 공휴일이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 ⑥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⑦ 주요 현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은 상임고문, 분과위원장, 간사와 협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분야별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1. 운영분과위원회 : 위원회 운영전반
 - 2. 문화분과위원회 : 각종행사지원등 문화 업무관장
 - 3. 복지분과위원회 : 복지관련 등 봉사활동 관련업무 관장
 - 4. 아동친화분과위원회 : 아동관련 프로그램 등 업무 관장
- ② 각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각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상임고문 및 분과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지명하거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다.

제13조(분과위 업무) 분과위원회별 업무는 상호존중 되어야 하며, 타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분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위원회 구성) 주요 현안이나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과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무 사항)

- ① 위원회 위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한다.
- ② 위원은 주민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 ③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사적인 이익도 추구할 수 없다.

제17조(실비보상 등)

- 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실비 보상금액 중 급량비는 공무원 특근 매식비 단가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은 최소한 실비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제18조(재정 및 회계) 지원금 및 수익금 등 자치회관 운영 재정은 별도의 독립예산으로 위원장의 책임 하에 간사가 관리한다.

제19조(애.경사)

- ① 주민자치위원의 친족(직계존.비속) 애경사시 금일십만원 상당의 화환을 증정한다.

②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운영위원과 상의하여 선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월례회의 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0조(회 비)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회비는 다음 각 호에따른다. 단, 회의수당 변경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비를 결정한다.

- ① 위원장은 월 6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 ② 부위원장은 월 4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월 4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 ④ 일반위원은 월 3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 (위원회는 특별회비나 협찬금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운영규정) 이 회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을 정한다.

부 칙

이 운영 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 3. 20.)

청운효자동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세칙

(일부개정) 2019.5.20.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종로구청운효자동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명칭은 청운효자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3조(시설 및 프로그램)

- ①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프로그램 수강신청 및 접수)

- ①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수강신청은 분기별 지정된 접수기간에 한다.
- ② 위원회는 프로그램별 수강 신청 시 수강료를 징수하고 수강증을 발급한 후 신청자 현황을 접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⑤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 수강인원이 10인 미만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 2개월째의 수강신청 기간 후에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익월 위원회 정례회의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정서와 실정에 맞추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⑥ 동장은 프로그램 수강생의 참여도, 강의실 사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의 신설, 교체, 통합, 분할, 폐강할 수 있다.

제6조(강사)

-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 ①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강사 수당은 1시간당 20,000원 이내, 초과한도 월 16시간 500,000원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회관 운영실정에 맞게 강사수당을 수입금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 및 강사 간 쌍방협약에 의하여 강사수당을 결정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 ①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 동장이, 수강료의 경우 위원회가 별표로 정한다.
- ② 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익일 오전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사용료 반환은 시설·장비 사용 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사용 개시 후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 ④ 위원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별도 운영계좌 익일 오전까지 입금하고 관리한다.
- ⑤ 수강료 수입금 중 100%이내에서 유급강사 강사료, 자치회관 운영요원 인건비, 각종 공과금,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비 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 1. 강사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강료 수입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
 - 2. 강사료는 추후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3. 강사료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며, 무단 결강 시에는 일할 계산하고 지급일은 익월 초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동장 및 위원회는 사용료,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회계 개시년도 30일전까지 지정한다.

제10조(이용 등)

-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환불규정) 환불은 별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되,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운영세칙은 2016년 2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10.「청운효자동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세칙」등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7.1.일 부터 시행한다.

[별 표]

사용료 등 (제10조 관련)

□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	단 위	면 적	상한금액	비 고
사용료	1회 1시간	50㎡ 미만	10,000원	· 부대시설포함 · 평일야간, 주말, 휴일 25% 가산
		50㎡ 이상 ~ 100㎡ 미만	15,000원	
		100㎡ 이상 ~ 150㎡ 미만	20,000원	
		150㎡ 이상 ~ 200㎡ 미만	25,000원	
		200㎡ 이상	30,000원	
수강료	월	-	50,000원	1명 1프로그램

- ※ 사용료는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30분마다 25%를 가산한다.
- ※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 ※ 평일야간 이용시간은 18시부터 22시로 한다.

□ 사용료 등 감면 기준

구 분	감면 비율	대 상	비 고
사용료	100 퍼센트	◦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 적용) ◦ 종로구 및 종로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한 비영리 직능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50 퍼센트	◦ 구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수강료	100 퍼센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u>종로구주소를</u> <u>가진</u> <u>사람으로</u> <u>1명당</u> <u>2강좌에 한함</u>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가족	
		◦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 가장	
	50 퍼센트	◦ 65세 이상 어르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